

학교법인 장춘학원

2022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8인	감사정수	2인
재적이사	8인	재적감사	2인
출석이사	7인	출석감사	0인

1. 일시 : 2022. 6. 21.(화) 14:00~15:10 (회의소집 통보일 : 2022. 6. 13.)

2. 장소 : 안동과학대학교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 임원	이사 7인	신정용, 권기덕, 권재주, 임규봉, 서재수, 심용선, 김선웅	
	감사 0인		
불참 임원	이사 1인	김미현	
	감사 2인	금정호, 최 진	

4. 안건

- 1)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 2)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기금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 3)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6) 기타 사항

5. 회의내용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개회시간이 되어 심홍재 사무국장이 참석임원을 보고하자 신정용 의장은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고 인사하다.

심홍재 사무국장은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이사회의 구성과 업무, 회의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다.

간서명	의 장	신정용	이 사	김미현	이 사	이규봉
-----	-----	-----	-----	-----	-----	-----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1호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내용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1호)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본예산 대비 수입의 기부금 수입, 예금이자 수입, 지출의 일반관리비, 운영비 등의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한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 총액으로 59,002,950원의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대하여 과목별 주요 내용 및 금액을 배부된 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권기덕 이사는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내역의 과목별 일부 조정으로 편성된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심용선 이사는 권기덕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권재주 이사는 심용선 이상의 동의에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1호 2022회계연도 법인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용선 이상의 동의와 권재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2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기금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2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기금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2022년 최근 물가 폭등, 교직원법정부담금 및 관리운영비 등 고정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등과 관련하여 기금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기금의 용도 변경 및 집행 계획을 배부된 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임규봉 이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입 감소, 인건비 및 물가 상승, 고정 지출 증가 등의 상황 대응을 위한 운영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임의건축기금을 운영비

간서명	의 장	신정용	이 사	심홍재	이 사	임규봉
-----	-----	-----	-----	-----	-----	-----

지출을 위한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용도 변경하고, 부족한 운영비를 임의특정목적기금에서 인출하여 충당할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심용선 이사는 임규봉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김선웅 이사는 심용선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2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기금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임의건축기금 540,000,000원을 임의특정목적기금으로 용도 변경하는 원안에 대하여 심용선 이사의 동의와 김선웅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3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3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수입과 2학기 등록금 수입 추정분을 반영하고 임의건축기금, 임의장학기금, 임의특정목적기금과 수입 및 지출 내역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한 2022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교비회계 수입 및 지출 총액 29,828,816,256원(등록금회계 13,640,990,889원, 비등록금회계 16,187,825,367원)의 세부 내역을 배부된 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김선웅 이사는 코로나19 상황과 등록금 수입, 기금 인출 수입에 따른 지출 내역 조정을 반영하여 적절히 편성된 2022학년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권기덕 이사는 김선웅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권재주 이사는 권기덕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3호 2022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기덕 이사의 동의와 권재주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4호 정관 변경에 관한

간서명	의 장	신정용	이 사	김선웅	이 사	심용선
-----	-----	-----	-----	-----	-----	-----

사항을 상정하고 심홍재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4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3063(2022. 5.19.) 학교법인 장춘학원 정관변경 보고 시정요구』 사항을 반영, 사립학교법 제2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교원과 관련된 사항은 임면이 아닌 임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임면권자를 임용권자로, 임면을 임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배부된 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상세히 설명하다.

신정용 의장은 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물으시다.

<임원 일동 대화 및 토론 후>

권재주 이사는 상위법령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육부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법인 정관의 변경 조항을 적절히 반영한 정관 변경·개정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개진하다.

서재수 이사는 권재주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임규봉 이사는 서재수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의장은 의안 제4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 내 '임면권자'를 '임용권자로, '임면'을 '임용'으로 하여 부칙을 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서재수 이사의 동의와 임규봉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원안대로 심의 가결되었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5호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상정하다.

(의안 제5호)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심용선 이사는 신정용 의장과 서재수 이사, 임규봉 이사를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 서명 임원으로 선출할 것을 개진하다.

권기덕 이사는 심용선 이사의 의견에 동의하다.

김선웅 이사는 권기덕 이사의 의견에 재청하다.

<참석이사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다.>

신정용 의장은 권기덕 이사의 동의와 김선웅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이사회 회의록 대표 간(間)서명 임원으로 신정용 의장, 서재수 이사, 임규봉 이사를 선출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언한 후, 의안 제6호 기타 사항을 상정하고 사무

간서명	의 장	신정용	이 사	서재수	이 사	임규봉
-----	-----	-----	-----	-----	-----	-----

국장 설명을 요청하다.

(의안 제6호) 기타 사항

심홍재 사무국장은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하다.

임원일동은 심홍재 사무국장으로부터 법인 및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시다.

6. 폐회선언

신정용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15:10)

학교법인 장춘학원 의 장 신 정 용 신정용

이 사 권 기 덕 권기덕

이 사 권 재 주 권재주

이 사 임 규 봉 임규봉

이 사 서 재 수 서재수

이 사 심 용 선 심용선

이 사 김 선 응 김선응

(의안 제4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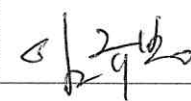
현행 정관	변경(안)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 4. (생략)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u>임면과 승진</u> 에 관한 사항(다만, 대학 교원의 <u>임면</u> 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2.17.> ③ (생략) 제1관 <u>임면</u> 제39조(<u>임면</u>)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u>임면</u> 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임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경우에는 이사장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대학의 장 이외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u>임면</u> 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10.16., 2015.12.17.> ③·④ (생략)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u>임면권</u> 자가 교원을 <u>임면</u> 하였을 때에는 <u>임면</u>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교원의 <u>임면권자</u> 는 휴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 임용----- ----- 임용----- ----- -----, <개정 2022.6.21.> ③ (현행과 같음) 제1관 <u>임용</u> <관명 개정 2022.6.21.> 제39조(<u>임용</u>) ① ----- ----- <u>임용</u> ----- ----- ----- -----, <개정 2022.6.21.> ② ----- ----- <u>임용</u> ----- -----, <개정 2022.6.21.>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u>임용권</u> 자----- <u>임용</u> ----- <u>임용</u> ----- ----- -----, <개정 2022.6.21.> 제41조(휴직의 사유) ----- ----- <u>임용권자</u> -----

간서명	의 장	신정남	이 사	신정남	이 사	이규봉
-----	-----	-----	-----	-----	-----	-----

현행 정관	변경(안)
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7.> 1. ~ 12. (생략) 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생략) ② <u>임면권자</u>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1. ~ 3.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u>임면권자</u>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u>임면권자</u>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u>임면권자</u>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생략)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u>임면권자</u>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	----- ----- ----- ----- --. <개정 2022.6.21.> 1. ~ 12. (현행과 같음) 제45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현행과 같음) ② <u>임용권자</u> ----- ----- ---. <개정 2022.6.21.> 1. ~ 3. (현행과 같음) ③ ----- ----- ---- <u>임용권자</u> ----- -----. <개정 2022.6.21.> ④ (현행과 같음) ⑤ <u>임용권자</u> ----- ----- ----. <개정 2022.6.21.> ⑥ ----- ----- <u>임용권자</u>는 능력 회복이나 태도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1.> ⑦ (현행과 같음) ⑧ ----- ----- ----- <u>임용권자</u> ----- -----. <개정 2022.6.21.> 제51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

간서명	의 장	이 사	이 사
	신정환	김민하	이규호

현행 정관	변경(안)
을 제외한다)의 <u>임면</u>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u>임용</u> ----- ----- ----- <개정 2022.6.21.>
제52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u>임면</u> 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7., 2019.8.1.> 2. ~ 4. (생략) ② (생략)	제52조(인사위원회 기능) ① ----- ----- 1. ----- <u>임용</u> ----- ----- <개정 2022.6.21.>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u>임면</u> <u>권자</u> 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 <u>임용</u> <u>권자</u> ----- ----- ----- <개정 2022.6.21.>
제66조(징계의결) ① (생략)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 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u>임면권자</u>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29.> ③ <u>임면권자</u> 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임면권자</u> 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4.26.> ④ ~ ⑥ (생략)	제66조(징계의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임용권자</u> ----- ----- <개정 2022.6.21.> ③ <u>임용권자</u> 가 ----- ----- ----- <u>임용권자</u> ----- ----- <개정 2022.6.21.>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칙<2022. 6. 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간서명	의 장		이 사		이 사	
-----	-----	---	-----	--	-----	---